

# 오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2012년 2월 8일 조례 제1202호  
(제명개정)

일부개정 2014년 12월 11일 조례 제1380호

일부개정 2019년 12월 20일 조례 제177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2. 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2. 11, 2019. 12. 20>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하 “다량배출사업장”이라 한다)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4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 주류 등의 전문점 및 주로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을 운영하는 사업장은 제외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그 밖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

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건조 후 남은 부산물을 포함한다)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7.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개별계량기기”란 공동주택에서 설치한 RFID기반 장비로서 계량방식에 의하여 세대별 배출자 정보가 입력되어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시 무게를 측정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기기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9. 12. 20>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을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 제2조제3호의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4조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시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보관·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제6조에 따른 사업장 이용 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을 포장해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시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등)**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민 등(단체포함)에게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삭제 <2019. 12. 20>

⑤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2. 20>

1.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 : 깔금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선호도 조사, 잔반그래프 비치 등
2.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식품위생법」 제36조제3호) 및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 깔금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3.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운영하는 자(「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 저온유통체계 구축, 소량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획 구매 홍보 등

⑥ 시장은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이하 “신고”라 한다)에 대하여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발생억제방법, 배출량에 따른 계약 비용 명시 여부(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에 대해 보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0>

⑦ 삭제 <2019. 12. 20>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이하 “종량제 시행”이라 한다)하여야 하며, 배출량 구간에 따라 수수료 부과 기준을 다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11>

②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단위 무게 당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 부담률을 고려하여 산정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 12. 11>

③ 수수료는 종량제 시행 방식에 따라 무게 측정·기록 후 납부고지 등으로 부과·징

수할 수 있으며, 기타 봉투 판매가격, 납부필증 등의 판매가격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④ 공동주택의 수수료는 단지별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한 후 세대 별로 배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주택 관리·운영주체가 처리수수료의 징수·납부를 대행할 수 있으며, 시장은 처리수수료 총액의 100분의 5범위 내에서 공동주택 관리·운영주체에게 대행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11>

⑤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⑥ 시장은 관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및 처리업자 중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하여 시장과 대행계약을 체결한자에 대하여는 대행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시장은 오산시 전지역을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으로 정하고,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을 쓰레기수수료 종량제지침에 따른 재활용가능·불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포함시켜 별표 2와 같이 정한다.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시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시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생활 폐기물과의 혼합배출 등과 같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① 삭제 <2019. 12. 20>

②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오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규격봉투와 동일하게 제작·판매하되, 색상은 일반 종량제 봉투와 구별이 용이한 색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 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달리하고 업소명을 표기해야 한다.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5

조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 및 종량제 개별계량기기(이하 “전용수거용기 등”이라 한다)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0>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및 전용수거용기 등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11, 2019. 12. 20>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0>

④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개별계량기기를 고의·과실에 의해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 그 행위자에게 수리 또는 구입에 필요한 실제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14. 12. 11>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용수거용기 등의 설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2019. 12. 20>

⑥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용수거용기 등의 세척 등 위생관리와 유지·보수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20>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 시장은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11>

③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하도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군·구의 관할구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당해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계약에 따라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 위반 등으로 영업을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조(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 방법 등)** ①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물기를 제거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0>

② 다량배출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 영 제7조제2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0>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이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재활용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2. 다량배출사업자가 스스로 수분을 건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따라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따라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건조된 부산물은 제1호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시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9. 12. 20]

**제16조(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다량배출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0>

1. 삭제 <2019. 12. 20>
2.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제8조제6항의 신고서 시장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서 작성 시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3. 시행규칙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에 명시한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 재활용시 계약한 내용(배출량에 비례한 비용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자가처리·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다음해 1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삭제 <2019. 12. 20>

[제목개정 2019. 12. 20]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점검)**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0>

1.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재활용 시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 신고서 이행 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
2. 다량배출사업장 위탁재활용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한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

**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제 10조,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1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수분을 건조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0>

**제19조** 삭제 <2019. 12. 20>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8조제4항 및 제6항, 제16조제1호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30일까지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종전의 제7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이 조례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생억제 방법을 갖추어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9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 부과기준은 종량제 전면 시행 이전까지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4. 12. 11 조례 제1380호>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2. 20 조례 제17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14. 12. 11>

### **음식물류 폐기물 운반·수집·처리수수료**(제9조제2항 관련)

-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개별계량기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1kg당/ 55원
-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개별계량기기가 설치되지 않은 아파트, 빌라, 연립, 다세대 주택 등: 음식물쓰레기종량제 봉투 사용

[별표 2]

## 재활용가능·불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제10조제1항 관련)

### 1.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요령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음식물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쓰레기</li> <li>- 조리전·후 음식물 찌꺼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물질(이물질을 제거하고, 물기는 최대한 제거하여 전용봉투 또는 수거용기에 물이 고여 있지 않도록 배출)</li> <li>- 소금성분이 많은 된장·고추장·간장·김치 등은 행구어 배출</li> <li>- 비닐·병뚜껑·패각류·복어내장·티백 등 딱딱하거나 유해하거나 포장되어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물질은 반드시 제거 후 배출</li> </ul>

### 2. 음식물류 폐기물의 분리배출 기준표

종 류	음식물류 폐기물로 분리배출하지 말아야 할 폐기물
육 류	- 소·돼지 등 육류의 뼈다귀 및 털
어패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개, 굴, 꼬막, 소라, 전복, 멍게 등의 패류껍데기</li> <li>- 게, 가재 등 갑각류의 껍데기</li> <li>- 복어내장</li> </ul>
과일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숭아, 살구, 자두, 감 등 핵과류의 씨</li> <li>- 땅콩, 밤, 호두, 도토리, 코코넛, 파인애플 등의 딱딱한 껍데기</li> </ul>
채소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쪽파, 대파, 미나리 등의 뿌리</li> <li>- 생강껍질, 마늘대, 옥수수속대, 고추대</li> </ul>
찌꺼기	- 각종 차류(녹차 등) 찌꺼기, 한약재 찌꺼기
곡 류	- 왕겨 등
기 타	- 분쇄시설의 고장방지 등 재활용시설의 적정처리효율을 위해 지나치게 딱딱한 물질은 일반쓰레기로 배출

오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별표 3] 삭제 <2019. 12. 20>

[별표 4] <신설 2019. 12. 20>

## 전용수거용기 및 개별계량기기 설치기준

(제12조제5항 관련)

### 1. 설치대상

-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아파트
- 나. 「주택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

### 2. 설치기준

- 가. 아파트 및 오피스텔 : 60세대당 120리터 개별계량기기 1대 이상.  
다만, 전용면적이 40㎡이하는 60세대 기준 1대 설치 후 추가 100세대당 1대 이상
- 나.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 120리터 전용수거용기 1개 이상

### 3. 설치장소: 건축물 부지 중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의 진·출입이 쉬운 입구 등

오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삭제 <2019. 12. 20>

[별지 제2호서식]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사업장명 :							(단위 : kg)	
연월일	발생량	자가처리			재활용			
		자가 처리방법	자 가 처리량	처리량 누 계	재활용량	재활용 방법	재활용자	누 계

< 작성요령 >

1.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시마다 일자별로 작성하되 처리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누계를 작성하고 연말에 최종누계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자가처리내역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는 자가 기재하며, 처리 방법은 건조·발효·발효건조, 소멸화 등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재활용내역은 스스로 재활용하거나 위탁재활용한 경우에 기재하며, 재활용방법은 퇴비·사료 등으로 기재하고, 스스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자가”로 기재하며, 위탁재활용하는 경우 위탁업소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